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. 2. 18 선고 2020가단332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주식회사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복

변론 종결 2021. 1. 28

판결 선고 2021. 2. 18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
값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9. 10. 15. 피고 주식회사 B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D 토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상에 전원주택 건축공사(이하 '이 사건 공사'라 한다)를 대금 2억 8,000만 원에 피고 회사가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(이하 '이 사건 제1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.

나.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115,000,000원을 지급하였고,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다.

다. 원고는 2019. 12. 30. 소외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 전원주택 내장공사를 대금 1억 6,500만 원에 E이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(이하 '이 사건 제2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이 사건 제2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"피고 회사가 공사한 현 상태에서 인수받아서 실내 공사를 마무리 한다(외벽공사 포함)"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.

[인정 증거 : 갑제1,3호증, 을제1,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)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즉,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금 1억 1,5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는 등 공사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,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서 골조공사만 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고, 위 공사 중 골조공사 및 설계비 등으로 7,000만 원만 지출하였다.

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 1억 1,500만 원에서 위 골조공사 등에 든 비용 7,000만 원을 제 외한 나머지 4,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,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,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2)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그 인정 증거에 비추어 볼 때, 갑제2내지 12호증(가지번 호 포함)의 각

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 인 없이 4,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.

나.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1)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즉,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지정한 피고 C 명의의 통장으로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1억 1,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, 피고들은 위 대금 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중단시까지 시공한 골조공사 등의 비용으로 든 7,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,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이 사건 공사 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었으므로, 피고 C은 연대보증책임으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4,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2)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,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채승원